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7
----------	-----

2023. 3. 24.(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유상용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3년 3월 7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9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3월 17일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유상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10~2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며 청소년의 일상생활 속까지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마약 확산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마약 예방교육 및 대책 마련이 미비한 상태임.

- 이에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마약관련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유해약물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학생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함(안 제6조)
- 유해약물 예방교육 위탁 사항을 보완 함(안 제7조)
-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가. 조례 제정이유

- 최근 SNS, 트위터 등 인터넷 온라인상에 마약 광고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비대면 유통과 거래를 통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호기심과 또래 집단의 영향이 큰 청소년 시기의 특성상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마약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음.
- 현재 청소년들은 마약 투여는 물론 유통, 판매까지 마약범죄 전반에 연루되어 있어 청소년 마약류 사범 현황을 보면,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2020년 313명 대비 43.8%, 5년 전 보다는 287.2% 급증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연령대별 증가율도 최고치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주목되며 경각심을 주고 있음.

충북에서도 지난해 10월 음성에 거주하는 18세 고등학생이 마약 성분(실로시빈:Psilocybin¹⁾)이 함유된 환각버섯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음.

- 현재 교육부는 2019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²⁾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도 매년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 마약류와 같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과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큰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임.

1) 실로시빈(Psilocybin): 환각버섯은 멕시코의 초지에서 자생하는 버섯으로 멕시코 원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를 환각제로 사용해 음. 이 버섯을 섭취하면 환각, 정신착란, 자각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남.

2) 교육부는 2019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학생 7대 안전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교육’을 통하여 1년에 10시간, 학기당 2회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 현황(2020년~2022년)〉

■ 학교급별 교육 횟수 (2022.8.31.기준)

(단위: 교)

급 별	2020					2021					2022				
	전체 학교	미 실시	실시학교			전 체 학 교	미 실시	실시학교			전체 학교	미 실시	실시학교		
			1 회	2 회	3회 이 상			1 회	2 회	3회 이 상			1 회	2 회	3회 이 상
초	260	5	101	104	50	259	2	96	109	52	256	0	113	97	46
중	128	16	67	30	15	129	5	68	32	24	129	0	79	33	17
고	84	9	41	17	17	85	6	36	25	18	83	0	55	15	13
총계	472	30	209	151	82	473	13	200	166	94	468	0	247	145	76

■ 교육내용별 실시 현황 (마약류: 2022.8.31.기준)

(단위: 교)

급 별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학교	마약류	약물 오남용	전체 학교	마약류	약물 오남용	전체 학교	마약류	약물 오남용
초	260	255	260	259	257	259	256	250	256
중	128	112	128	129	124	129	129	112	129
고	84	75	77	85	79	79	83	70	83

〈충청북도교육청 마약 관련 외부전문기관 의뢰 교육 실시 현황〉

- 2020~2022년: 도내 유관기관(충북약사회)과 업무협약으로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연도	지원학교	실시 횟수	대상인원	비 고
2020년	21교	70회	1,867명	충북마약퇴치운동본부
2021년	30교	74회	1,767명	
2022년	42교	177회	7,059명	
	9교	40회	1,570명	충북약사회 (약물오·남용예방교육)
	17교	70회	1,739명	대한약사회 (약바르게알기교육)

○ 이에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 받고 있는 청소년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며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대처 역량을 키워주고자 현행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 “유해약물” 정의 규정에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유해 약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개념을 명료화하고 마약류 관련 예방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에는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약물 예방교육 횟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교육시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고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에는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충청북도교육감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유해약물 위탁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였음.
- 안 제9조에 유해약물 예방 및 대처에 관한 홍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홍보체계 마련을 규정하여 유해약물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주요내용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해약물을” 을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청소년 유해약물을”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실시” 를 “연 1회 이상 실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계하여” 를 “연계하여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홍보)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과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체계를 마련하여 홍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u>유해약물</u>을 말한다.</p> <p>3. (생 략)</p> <p>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u>실시</u>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u>연계</u>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p> <p>③·④ (생 략)</p> <p>제7조(위탁)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청소년유해약물</u>을 ----.</p> <p>3. (현행과 같음)</p> <p>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① - ----- ----- <u>연 1회 이상 실시</u>----- -----.</p> <p>② ----- ----- <u>연계</u> <u>하여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u>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u></p> <p>제9조(홍보) <u>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과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강</u></p>

제9조 · 제10조 (생략)

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체계를 마련하여 홍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 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관계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 3. 생략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학교보건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 26., 2019. 12. 10., 2021. 12. 28.>

[전문개정 2007. 12. 14.]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학생 유해약물 및 마약류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학생 유해약물 및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 소요경비

3. 관련조문

- 안 제7조(위탁)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편성지침및기준
- 2) 2022학년도 MOU체결 등 외부강사에 의한 학생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예방교육 실적(총 284회)

나. 추계결과 :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180,000천원(연 36,000천원)

- ※ 2023년도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외부강사에 의한 수업률 증가 예상으로 추정치 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 보통교부금 100%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180,000	
학생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180,000	
재원 조달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180,000	
의존 재원	소 계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180,00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180,0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